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72
----------	-------

발의연월일 : 2026. 3. 26.

발 의 자 : 한지아 · 박정하 · 조지연

김성원 · 김재섭 · 고동진

서일준 · 이상휘 · 박성훈

배준영 · 정연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개발된 혁신 의약품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여 초기 시장진입과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인증을 통하여 연구개발 역량과 경쟁력을 인정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취득이 공공구매로 연결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백신과 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하여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제2항제9호 신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내 생산 필수약품의 우선 구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국내 제약산업의 자립적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약품 비축사업 또는 예방접종사업 등 의약품 구매가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약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구매 사업의 범위, 우선 구매 절차 및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약품의 판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의약품의 국내 연구개발·제조 기반 강화 등 의약품 자급화 촉진 계획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국내 생산 필수약품의 우선 구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제약산업의 자립적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약품 비축사업 또는 예방접종사업 등 의약품 구매가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약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구매 사업의 범위, 우선 구매 절차 및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약품의 판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조(제약산업육성 · 지원종합계획) ① (생 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제4조(제약산업육성 · 지원종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u>9. 의약품의 국내 연구개발 · 제조 기반 강화 등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u>
<u>9. (생 략)</u>	<u>10. (현행 제9호와 같음)</u>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